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0회 제2차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3. 11.

이진환 의원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이진환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달서구의회 동의 받도록 기간을 명시하여
- 형식적 사전 동의 절차 등을 통한 재위탁 및 재계약 사례를 방지하고,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6조제2항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제13조제1항에 따른 ‘위탁계약의 해지’ 사유 발생 시 재위탁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형식적 사전 동의 절차 등을 통한 재위탁 및 재계약 사례를 방지하고,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
-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이진환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3128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1. 3.
발 의 자: 이진환, 이선주, 정창근,
김장관, 박왕규

1. 제안이유

-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기간을 명시화함으로써 형식적 사전 동의 절차 등을 통한 재위탁 및 재계약 사례를 방지하고,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및 단서 신설(안 제6조제2항)

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1
- 나. 관계법령 : 붙임 2
- 다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“사전에 의회”를 “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”로 하고,
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
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1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<u>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 <단서 신설></p>	<p>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위탁기 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----- ----- . 다만, <u>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</p>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